

#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서울 청년의 보다 나은 주거환경 확보로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삶의 선택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2020년 6월, 서울시가 '청년월세지원사업' 새롭게 시작합니다.

## □ 모집 신청

- 신청모집 : '20.6.16.(화) 09:00.~6.29(월) 18:00 ※ 공고 예정일 : 6.16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내 온라인 신청

##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 5천명 (만19세~39세 이하)  
- 연도별 지원계획 : `20년 5천명, `21년 20천명, `22년 20천명.  
\* 소득액 기준 : 붙임의 '2020년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참고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임대료 지원 (최대 10개월·200만원) ※생애 1회 지원
- 지원방법 : 신청 및 관리시스템 구축,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
- 선정조건 :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서울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인 청년1인 가구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임대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지원신청 제외자

-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 일반재산(토지과세표준액 + 건축물과세표준액 + 임차보증금 + 차량시가표준액) 1억 원 초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 대상자는 가능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부터 1~3순위  
 그룹을 선정 후 1·2·3 순위대로 우선 선발

- (1순위) 2천만 원이하, (2순위) 5천만 원이하, (3순위) 1억 원이하

※ 지원자가 5천명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되는 해당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 선정

〈 참고자료 〉

2020년 기준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단위:월/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2,109,000	70,702	29,273
2인	3,590,000	120,068	107,954
3인	4,645,000	156,170	155,683
4인	5,699,000	192,080	199,256
5인	6,753,000	228,710	243,851
6인	7,808,000	260,770	281,687
7인	8,868,000	298,124	320,200
8인	9,928,000	343,406	368,522

※ 2019.12월 보건복지부 기준 참고

※ 유의사항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오는 6월 16일부터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예정으로 사업 내용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모든 자격기준은 공고일 기준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상세 사업 내용은 향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